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9. 9.] [총리령 제1642호, 2020.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의무자가 아닌 영업자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표시·안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모든 액체 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식품 등에 대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64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9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2 1. 공통사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2.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의 제1호마목 중 "함량이나"를 "함량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2.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의 제4호라목을 삭제한다.

#### 4. 고카페인 함유 표시

##### 가. 표시대상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 나. 표시방법

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 문구를 표시할 것

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 다.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별표 5 비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교

1.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만 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

별표 7 Ⅰ. 일반기준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Ⅰ. 일반기준의 제13호나목 중 "제조·포장·가공"을 "제조·가공·수입·처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조·포장·가공"을 "제조·가공·수입"으로 한다.

12.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및 용기·포장류제조업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가목1)가)의 위반사항란 중 "식품"을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4)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4)가)부터 카)까지를 각각 라)부터 하)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하)[중전의 카)]의 위반사항란 중 "차)까지"를 "파)까지"로 한다.

|   |                                |                    |                    |
|---|--------------------------------|--------------------|--------------------|
| 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                    |                    |
| (1)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유통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호의 표의 가목6) 및 7)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p>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닭,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 중 포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p> <p>1) 생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p> <p>가)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p> <p>나) 유통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p> <p>2)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p> <p>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운용하고 있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p> <p>4) 1)부터 3)까지 외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p> | <p>법 제14조 및 제16조</p> |                                 |                             |                             |
|  |                      | 영업정지<br>1개월과<br>해당 제품<br>폐기     | 영업정지<br>2개월과<br>해당 제품<br>폐기 | 영업정지<br>3개월과<br>해당 제품<br>폐기 |
|  |                      | 영업정지<br>7일                      | 영업정지<br>15일                 | 영업정지<br>1개월                 |
|  |                      | 영업허가·<br>등록 취소<br>와 해당<br>제품 폐기 |                             |                             |
|  |                      | 영업정지<br>1개월                     | 영업정지<br>2개월                 | 영업정지<br>3개월                 |
|  |                      | 시정명령                            | 영업정지<br>10일                 | 영업정지<br>20일                 |

별표 7 II.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가목1)라)의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3)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br>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br>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br>1 개월 과 해당 제품 폐기 |
| 4) 달걀의 껍데기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산란일 또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여한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br>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br>1 개월 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br>2 개월 과 해당 제품 폐기 |

별표 7 II.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다목4)가)부터 아)까지를 각각 라)부터 카)까지로 하고, 같은 4)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4)카)[중전의 아)] 중 "사)까지"를 "차)까지"로 한다.

|  |   |   |  |
|--|---|---|--|
| 가)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br>(1)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br><br>(2) 유통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br><br>나)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br><br>다)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영업정지<br>1 개월 과 해당 제품 폐기<br><br>영업정지<br>7일<br><br>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br><br>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br>2 개월 과 해당 제품 폐기<br><br>영업정지<br>15일<br><br>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br><br>영업정지<br>1개월 | 영업정지<br>3 개월 과 해당 제품 폐기<br><br>영업정지<br>1개월 |
|--|---|---|--|

별표 7 II. 개별기준 제4호의 표의 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2)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br>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br>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br>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별표 7 II. 개별기준 제4호의 표의 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2)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br>가)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br>(1)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br><br>(2) 유통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br><br>나)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br><br>다) 가) 및 나) 외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br>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br><br>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br><br>시정명령 | 영업정지<br>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br><br>영업정지<br>15일<br><br>영업정지<br>5일 | 영업정지<br>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br><br>영업정지<br>1개월<br><br>영업정지<br>10일 |
|--|---|--|---|

별표 8 제1호가목 중 "제1호가목1)가)·4)라)"를 "제1호가목1)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호라목1)·5)"를 "제1호라목1), 같은 목 4)다) 및 같은 목 5)"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제2호가목1)·6)"을 "제2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2호나목1)"을 "제2호나목2)·3)"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제3호가목1)가) 및 3)나)·다)"를 "제3호가목1)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호다목1)"을 "제3호다목1), 같은 목 4)가)(1) 및 같은 목 4)나)"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카페인 함유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의 제4호라목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중 영유아용 식품등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